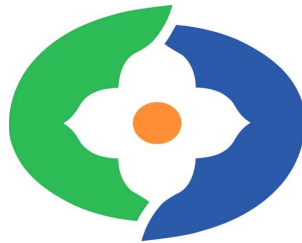


2019년도
매곡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9. 3. 25. ~ 3. 28. (4일간)
- 대상기관 : 매곡면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6. 2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각종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적정여부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6건
 - 행정상 조치 : 16건(주의 10건, 시정 6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1,677,12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경로당 방문 산불예방 교육
 - 교육대상 : 산불취약 계층인 노약자 대상 경로당 순회 방문
 - 교육내용 : 산불발생 원인, 대형산불 사례, 산불조심 홍보 영상
 - 기대효과 : 산불 예방 중요성 인식과 실천의 동기부여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총 16건 (총무 8 , 산업 7, 공통 1)	주의 10 시정 6		회수 4건 1,677,120원
1	총무	◦ 여비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0,000원
2		◦ 신용카드 결재계좌 관리 부적정	시정		
3		◦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주의		
4		◦ 이장수당 지급일 부적정	주의		
5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주의		
6		◦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작성 소홀	주의		
7		◦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소홀	주의		
8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주의		
9	산업	◦ 소규모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소홀	시정		회수 550,000원
10		◦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주의		
11		◦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69,580원
12		◦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소홀	주의		
13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14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시정		
15		◦ 쌀·밭직불제사업 업무추진 소홀	시정		회수 1,037,540원
16	공통	◦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업무 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지급 부적정

【현 황】

1. 출장자 여비 과오지급 내역

지급일	여비과목	대상자	지급액(원)	적정 지급액(원)	과오 지급액(원)	비고
계		2명	53,600	33,600	20,000	
'18.03.**	기본경비 (국내여비)	○○○	26,800	16,800	10,000	공용차량 사용 1만원 감액
'18.07.**	기본경비 (국내여비)	☆☆☆	26,800	16,800	10,000	공용차량 사용 1만원 감액

2. 출장내역서

출장일자	공용차량 사용여부	출장자	출장내용	출장지
'18.02.**. (1일)	사용	○○○	□□ 회의 참석	청주
'18.07.**. (08시~19시)	사용	☆☆☆	◎◎ 교육 참석	청주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및 [별표 2]에 의하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의 일비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

- 매곡면에서는 위 【현황】 과 같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한 경우 일비의 2분의 1일을 감액한 1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 외 1명에게 각각 1만원씩 총 2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과다지급한 일비 20,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여비 지급시 공용차량 사용자에게 대해 일비 전액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현 황】

○ 법인카드 현황

용도	발급일자	카드번호	결제계좌		비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법인일반용 및 현금영수증	2016-01-** (재발급)	****-****-****-8123	농협	407104-**-*****	
	2017-12-** (재발급)	****-****-****-6179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2015-11-** (신규발급)	****-****-****-0763			
	2019-01-** (재발급)	****-****-****-1234			

○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단위 : 원, '19.3.27기준)

계좌번호	사용용도	계좌잔액 (A)	지출예정금액				차액 (C=A-B)	대금결제 기준일	
			계 (B)	3.27일 (일반)	4.7일 (유류)	4.12일 (일반)		일	말일
407104- **-***** *	카드결제 및 자동이체	3,573,190	3,504,720	2,993,290	304,430	207,000	68,470	전월16일~말일 : 12일	당월 1일~15일 : 27일
								유	전월16일~말일 : 7일
								류	당월 1일~15일 : 22일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3. 신용카드 사용절차/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매곡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법인 일반용 1, 공공조달 유류구매 1)의 이용내역과 카드결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점검한 결과, 감사범위인 2016.2.12. 이전부터 결제계좌에 원인불상의 금액 66,470원이 지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었고, 2016.4.20.일에 현금 2,000원이 입금되었다. 매월 카드결제 지출일(일반: 12일, 27일/ 유류: 7일, 22일)에 지출 후 다음 지출예정금액을 공제한 계좌잔액은 0원으로 남아야 함에도 2019.03.27.일 기준 계좌잔액은 3,573,190 원이나 지출예정금액은 3,504,720원으로 68,470원이 계좌잔액으로 남음에도 매곡면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 세입조치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계좌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 68,470원에 대해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관해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현 황】

1. 회계관직 겸직 내역

기간	구분	기존		직무대리		사유	비고
		직	성명	직	성명		
2017.11.**. ~ 2017.11.**4.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주민복 지팀장	***	특별휴가	지출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 납원 겸임발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 지팀장	***	-	-		
2016.1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주민복 지팀장	***	연가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 지팀장	***	-	-		
2016.12.**. ~1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주민복 지팀장	***	교육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 지팀장	***	-	-		
2016.10.**. ~10.**.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주민복 지팀장	***	교육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 지팀장	***	-	-		
2016.6.**.	재무관	면장	***	부면장	***	병가	재무관과 지출원 겸임발생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	-		
2016.6.**. ~6.**.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주민복 지팀장	***	교육	지출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 납원 겸임발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 지팀장	***	-	-		
2016.5.**.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주민복 지팀장	***	연가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 지팀장	***	-	-		
2016.4.**. ~4.**.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주민복 지팀장	***	교육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 지팀장	***	-	-		

2. 직무대리 미지정

① 미지정 내역

기간	구분	기존		직무대리		e호조 지출원		비고
		직	성명	사유	지정여부	직	성명	
2016-05-**-**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연가	부	주민복지 팀장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지 팀장	***	-	부			
2016-07-**-**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부면장	-	공로연수	부	주민복지 팀장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주민복지 팀장	***	-	부			

② 지출내역

적요	지급정보				품의정보		원인정보		결의 정보	지급정보	
	지급일자	지급명 령번호	지급금액	거래처명	담당자	승인자	담당자	승인자		담당자	승인자
총계	9건		3,543,200								
소계(5.**)	1건		1,596,330								
**** 지급	2016-05-**-**	44	1,596,330	-	-	-	-	-	-	-	-
소계(7.**)	8건		1,946,870								
**** 여비	2016-07-**-**	63	160,000	-	-	-	-	-	-	-	-
수수료 지급		62	297,200	-	-	-	-	-	-	-	-
수수료 지급		61	248,100	-	-	-	-	-	-	-	-
**** 지급		186	87,000	-	-	-	-	-	-	-	-
**** 대금지급		185	422,820	-	-	-	-	-	-	-	-
**** 지급		184	350,450	-	-	-	-	-	-	-	-
**** 정비		183	217,000	-	-	-	-	-	-	-	-
**** 수리		182	164,300	-	-	-	-	-	-	-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매곡면은 군의 소속행정 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으로 제1관서에 해당하며 지출원은 부면장임.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고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 면장은 문서로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매곡면에서는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고,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역시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황 1]에서와 같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였으나 겸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2016.5.**.일과 2016. 7. **.일에 지출원(부면장)이 연가 및 공로연수로 부재중임에도 지출원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고 e호조상 지출원 주민복지팀장을 통해 [현황 2]에서와 같이 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시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직무대리 지정시 겸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명령 승인시에는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수당 지급일 부적정

【현 황】

○ 이장수당 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한 내역

연도	수당	지급일	연도	수당	지급일
2017	7월 이장수당	2017-07-24	2018	1월 이장수당	2018-01-26
	10월 이장수당	2017-10-31		3월 이장수당	2018-03-21
	11월 이장수당	2017-11-27		7월 이장수당	2018-07-31
2019	1월 이장수당	2019-01-22		10월 이장수당	2018-10-31
	2월 이장수당	2019-02-25		11월 이장수당	2018-11-21
	-	-		12월 이장수당	2018-12-26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상촌면에서는 이장수당 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않고 위 현황처럼 지급일을 경과하여 이장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장수당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지급을 경과하여 이장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 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현 황】

○ 물품 구입 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재배정)			지급일	지 급 명령 번호	적 요	채권자	지급액			지역개발공채	
세부	편성 목	통계목					공급가액	세액	계	매입 금액	적정매입 금액
사업 (보조)	자산취 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2018- 11-	158	□□□□ 장비	-	2,727,272	272,728	3,00,000	60,000	40,000

【위법부당사항】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시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100를 공채로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하고, 제9조에 따라 계약자의 대금청구시 공채매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매곡면에서는 2018년 재배정 예산과목 ○○○○사업(보조)으로 (주)☆☆☆☆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면서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금액이 40,000원이나 60,000원으로 잘못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시 계약자가 매입 비율에 맞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는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작성 소홀

【현 황】

신고인 및 처리내역			내역	처리여부		비고
년월일	성명	주소		수불대장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부과	
계(3건)						
2018.04.**	-	-	장롱 1개 서랍장 1개	×	○	
2018.11.**	-	-	소형의자 2개 벽시계 1개	×	○	
2019.03.**	-	-	쇼파(2인용) 1개 쇼파(1인용) 1개	×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생활폐기물배출방법), 제13조(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등을 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5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스티커는 부착용과 수수료 납부증명인 보관용으로 구분·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매곡면에서는 2018. 1. ~ 현재까지 대형생활폐기물처리증을 판매하면서 대형폐기물처리 수불대장에 3건의 판매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만 부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대형폐기물 처리신고 접수시 수수료 부과 외에 수불대장에 판매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소홀

【현 황】

-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미 실시 현황
- 2016년 ~ 2019년 하자검사 따로검사 미 실시 현황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매곡면에서는 2017년 상반기 「○○○○ 공사」의 5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6년 ~ 2019년 까지 「□□□ □ 공사」의 66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완료된 시설공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현 황】

○ 당직근무 시 보안(세콤)장치 개·폐 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자 또는 초과자		비고
		해제	세트	직급	성명	
1	2018.04.**.(일)	08:50:37	-	-	-	
2	2018.05.**.(토)	08:50:33	-	-	-	
3	2018.06.**.(토)	18:25:47	-	-	-	
4	2018.08.**.(일)	23:31:32	-	-	-	
5	2018.10.**.(토)	09:03:37	18:01:10	-	-	
6	2018.12.**.(일)	21:33:16	-	-	-	
7	2018.12.**.(일)	22:10:13	-	-	-	
8	2019.01.**.(일)	21:14:09	-	-	-	
9	2019.01.**.(일)	18:44:51	-	-	-	
10	2019.01.**.(일)	22:07:13	-	-	-	
11	2019.02.**.(수)	08:30:15	-	-	-	
12	2019.02.**.(토)	21:51:00	-	-	-	
13	2019.02.**.(일)	22:23:11	-	-	-	
14	2019.02.**.(일)	23:17:37	-	-	-	

※ 2018.03.01.~ 현재. 보안(세콤)장치 표본 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2018. 4. **. (일) ○○☆급 △△△ 등 10명은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 등을 하면서 출근 시 1회 지각으로 인해 세콤 해제를 지연하였고, 퇴근 시 13회 세콤 세트를 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청사 보안관리 및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면서 지각하여 출근하거나 보안(세콤)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퇴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및 당직근무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5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소홀

【현 황】

공 사 명	사 업 량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계	2건							550	
☆☆☆☆공사	콘포장 77m 다이크 77m	-	17.11.**	17.11.**	17.12.**	9,109	8,595	514	
■■■■공사	블록 20m 콘포장 265㎡ 배수로 32m	-	17.06.**	17.06.**	17.07.**	16,049	16,013	36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7. 11. **.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 공사」 건에 반영된 다이크(H=0.3m) 77m 중 9m가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514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 2017. 6. **.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 공사」 건의 반영된 폐기물 운반비는 수수료 성격의 경비 항목으로 제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어야 함에도 폐기물 운반 18 m³에 대하여 제경비를 반영하여 3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 공사」 및 「■□■□■ 공사」 건에 대해 설계변경없이 준공처리하여 과다지급한 550,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현 황】

○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미제출 현황

공 사 명	사 업 량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비고
계	3건						
☆☆☆☆공사	폐콘 3.1ton	6,570	-	16.12.**	16.12.**	16.12.**	
◎◎◎◎공사	폐콘 7.4ton	5,519	-	17.04.**	17.04.**	17.04.**	
□□□□공사	폐콘 2.3ton	5,927	-	17.08.**	17.08.**	17.09.**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매곡면에서는 2016. 2. **. (주)○○○○ △△△과 계약하여 완료
한 「□□□□ 공사」 외 2건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
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신고필증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준공신고서 접수시 건설폐기물신고필증의 첨부자료 확
인에 철저를 기하고 자료제출이 없음에도 보완요청없이 준공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9,58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감액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공사	스틸 50m 포장 133㎡	8,918	-	17. 11. **	17. 11. **	17. 12. **	79,550	149,130	69,580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21)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 산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별표16”의 기준에 의거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7. 11. 02. (주)◇◇◇◇ ☆☆☆와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건에 대하여 준공 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으로 반영할 수 없는

청소하는 작업자 사진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정산 없이 준공금을 지출하여 69,58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 공사」에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과다지급한 69,58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소규모 사업의 정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소홀

【위법부당사항】

- 2016~2018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과수원에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특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명농업실천으로 품질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수원예농가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인한 재배 노동력 절감 및 영농생력화를 도모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보조 50% 자담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각 세부사업별 수요조사 참여 농가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량보다 배정량이 적을 경우 자체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추진협의회(심의회)에 상정, 공개심의 등의 방법을 통해 농가 선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자선정 시 최근년도 지원사업 혜택이 적은 농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친환경 품질인증(신고) 농가,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신청농가주 농외소득이 37백만원이상인

자, 최근 3년간 보조사업 포기자(단, 불가피한 포기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 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 외 29농가에 대하여 3회에서 7회까지 일부 농가에 편중하여 보조사업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지원 제외대상 요건과 달리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하였던 △△△ 외 13명에 대하여 불가피한 포기사유가 분명하다고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자체평가기준, 우선순위, 공개심의를 통해 여러 농가가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와 함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날인을 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www.e-revenuestamp.or.kr)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2016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특히,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하면서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발행을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지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전자적 소인 처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수리시 구비서류 확인과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현황

상속인	피상속인	주소	차 량 번 호	사망일	상속일	지연기간
△△△	◎◎◎	매곡면	충북영동* ****	2016.07.**.	2017.05.**.	124일
☆☆☆	□□□	매곡면	충북영동* ****	2008.03.**.	2018.01.**.	3,408일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4항6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별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읍·면장에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 외 1명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수리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 외 1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037,54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쌀·밭직불제사업 업무추진 소홀

【위법부당사항】

-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애그릭스)을 입력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논농업 및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¹⁾에서 논농업 및 밭농업에 종

1)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 1998. 1. 1. ~ 2000.12.31.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2012. 1. 1. ~ 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을 미충족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6 ~ 2018년 쌀·밭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전·답·과수원 지목을 제외한 하천, 대지, 임야, 잡종지 등 지목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 매곡면에서는 쌀·밭직불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① 매곡면 △△리 ***번지 외 2필지의 경우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쌀 고정직불금 77,500원 및 밭 직불금 13,090원을 지급하였고, ② 매곡면 □□리 ***번지의 경우 창고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2016년 쌀 고정직불금 314,850원 및 쌀 변동직불금 617,3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매곡면 ◎◎리 ***번지 외 1필지의 경우 창고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2016년 밭 직불금 14,800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 ◇◇◇ 외 2명에게 쌀·밭 직불금 총 1,037,54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쌀·밭직불금 1,037,54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쌀·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업무 소홀

【현 황】

○ 기간제근로자 임의채용 현황

채용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근로기간	공개채용 여부	비고
2016년	○○○○ 사업	1명	2. 1. ~ 12.31.	부	
2016년	◆◆◆◆ 사업	2명	3.28. ~ 5. 4.	부	
			4.18. ~ 4.20.		
2017년	◆◆◆◆ 사업	1명	2.13. ~ 4.28.	부	
2017년	□□□□ 사업	2명	6. 1. ~ 6.31.	부	
2018년	□□□□ 사업	2명	6. 1. ~ 6.30.	부	

【위법부당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 자격기준 등을 정립하여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고용을 방지하고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행정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및 인력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의회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및 인력관리 기준』에 따르면 채용절차·인력관리의 주체는 본청은 영동군수, 직속기관·사업소는 기관장, 읍·면은 읍장·면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절차의 경우 무분별한 고용 실태[임의채용, 반복 갱신(연속 사용) 등]를 방지하고자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영동군 홈페이지 및 읍·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근로를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2016년 ○○○○ 사업 외 1개사업, 2017년 ◇◇◇◇ 사업 외 1개사업, 2018년 □□□□ 사업에 대하여 총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홈페이지 공고(7일 이상) 등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임의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홈페이지 공고 등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임의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